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 보장〉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87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7118호,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6
※ 참고자료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0121호,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6.
3. 회부연월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군인의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4(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 국가는 군에 대한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편,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군인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¹⁾고 규정하여 복무여건 개선에 관한 포괄적 의무를 선언하고 있으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군인의 안전 확보는 전투력 유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국가의 시설 부문에 관한 보호책무를 법률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군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 대피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모든 군사시설에 방호성능을 갖춘 대피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

아울러 군사시설은 부대별 임무와 작전개념에 따라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바, 부대 전체가 작전 상황시 현 주둔지에서 별도로 지정된 집결지로 이동하는 육군 부대 등의 경우에는 현 주둔지 내 시설에 대하여 방호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은 과거에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군인의 안전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의안번호 제2210121호)의 논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 정 안	의안번호 제2210121호 ²⁾
제17조의4(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 국가는 군에 대한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안전권의 보장)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성 논거로는 현행법에 군인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기본법의 선언적 성격상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음.

반면 반대 논거로는 해당 내용은 추상적·훈시적 성격에 그쳐 입법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점, 법률에 지나치게 많은 사항을 규정함에 따른 운영상 경직성 및 예하부대의 부담 증가 우려 등이 제기되어, 결론적으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필요성 및 실익,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해당 개정안은 '25.11.25.(제429회 국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6.3.23.(제433회 국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총 2차례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바 있으며, 해당 개정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음.

□ 국방부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고려할 때 모든 군사시설에 방호 성능을 갖춘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³⁾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 개정보다는 실무적으로 임무수행 여건상 일시적 대피시설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118호,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10

3) 군 대피시설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부대별·시설별로 방호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방호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방호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각 군별로 작전계획에 따라 별도의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운용 중이라는 입장임.

- (육군) 주둔지 단위로 대피공간 지정(지하 보일러실, 다목적실, 1층 창고 등)
- (해군) 대피인원 위치 기준 667m 이내 시설(작전지휘시설, 터널, 콘크리트 건물 등)의 미사용 격실, 지하실을 대피장소로 지정
- (공군) 단위부대별 지하 PIT실 또는 지상 1층 내 사무실과 복도를 대피장소로 지정

(의안번호 제2217118호,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 6 –

<신 설>

5. (생 략)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5.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1.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

2.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군사 대피시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의 편성

④ (현행과 같음)

※ 참고자료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0121호,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7조의4(안전권의 보장)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